

대전지방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사건	2025타경502787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물건번호	1	작성 일자	2026. 1. 8.	담임법관 (사법보좌관)	배진	<u>전자서명완료</u>
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최선순위 설정	2022. 9. 28. 근저당권		배당요구종기	2025. 9. 29.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점유자 성명	점유 부분	정보출처 구분	점유의 권원	임대차기간 (점유기간)	보증금	차임	전입신고일자· 외국인등록(체 류지변경신고) 일자·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여부 (배당요구일자)	
조사된 임차내역없음										
<p><비고></p> <p>※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p>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p> <p>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p> <p>비고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첨부된 조치원읍 사실조회회신 참조) - 지목상 '답'이나, 현황상 '전(휴경지)'임 										

※1: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부동산의 표시

2025타경502787

[물건 1]

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239
답 1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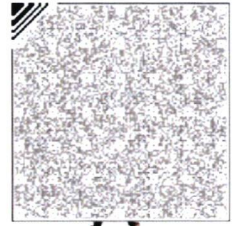
감정평가액		440,920,000	
회차	기 일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금
1회	2026.02.24	440,920,000	44,092,000
2회	2026.03.31	308,644,000	30,864,400
3회	2026.05.06	216,051,000	21,605,100
4회	2026.06.10	151,236,000	15,123,600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첨부된 조치원읍 사실조회회신 참조)
- 지목상 '답'이나, 현황상 '전(휴경지)'임

"햇살은 나눌수록 따뜻하고 미소는 번질수록 아름답다." (이달의 우리말 글귀)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수신 대전지방법원장(경매9계)
(경유)

제목 사실조회서(2025타경502787 부동산임의경매) 회신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사건번호 「2025타경502787 부동산임의경매」 관련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조치원읍 소재 토지의 사실조회 의뢰 건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사실조회 회보(2025타경502787) 1부. 끝.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1977

산업팀장 한송연

건설산업과장 임일택

전결 2025. 7. 25.

협조자

시행 조치원읍-26331 (2025. 7. 25.) 접수

우 30024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6길 17,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 / <http://www.sejong.go.kr>

전화번호 044-301-5261 팩스번호 044-301-5269 / hanyangv@korea.kr / 비공개(5,6)

부동산임의경매 법원사실조회 회신

□ 사실조회 대상토지 현황

No	토지의 소재			지목	지적(㎡)	비고
	읍면	리	번지			
1	조치원읍	봉산리	239	답	1,460	

□ 조회사항 및 회신내용

조회사항 1

상기토지의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

-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에 해당됨.

조회사항 2

농지가 아닌 경우, 전용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현재 농지전용 허가(신고)된 사실 없음.

조회사항 3

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허가연월일, 허가조항, 전용목적 및 허가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 해당사항 없음.

조회사항 4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농작물 재배 가능한 농지로 원상복구 해야 함.

조회사항 5

상기농지 매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